

한솔 출판사 소방시설관리사 정오표

3-121	<p>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등</p> <p>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p>	150 m ² 미만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p>단란주점</p> <p>150 m² 미만</p> <p>단란주점은 위락시설</p>	<p>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p>
3-129	<p>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법 4조, 령 7조의 2)</p> <p>(1)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자 - 소 방본부장</p> <p>(2) 소방특별조사위원회</p> <p>①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p>	<p>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법 4조, 령 7조의 2)</p> <p>(1)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자 - 소방본부장</p> <p>(2) 소방특별조사위원회</p> <p>①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p>			
3-130	<p>※ 중앙소방특별조사단</p> <p>①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p>	<p>※ 중앙소방특별조사단</p> <p>①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 려하여 구성한다.</p>			
3-134	<p>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p> <p>바다면적 - 200 m²</p> <p>이상인 층</p> <p>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p> <p>20대 이상</p>	<p>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p> <p>바다면적 - 200 m²</p> <p>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p> <p>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p> <p>20대 이상</p>			
3-137	<p>추가</p> <p>③ 내진 설계대상 (법 제9조의 2, 령 제15조의 2)</p>	<p>(3)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제9조의4)</p> <p>①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 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국민안전처장관</p> <p>①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 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 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p> <p>②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 계적으로 연구하여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여야 하고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③ 내진 설계대상 (법 제9조의 2, 령 제15조의 2)</p>			
3-137	<p>④ 성능위주설계(법 제9조의 3)</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한 것만 해당)은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 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 하여 설계("성능위주설계")하여야 한다.</p> <p>-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아래 추가</p>	<p>⑤ 소방용품의 내용연수</p> <p>-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10년)</p>			

3-142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52 125 400 271">연결송수관 설비</td> <td data-bbox="400 125 839 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설치시 면제된다. </td> </tr> </table>	연결송수관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설치시 면제된다.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71 125 1019 271">연결송수관 설비</td> <td data-bbox="1019 80 1442 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설치시 면제된다. 다만 최상층의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설치. </td> </tr> </table>	연결송수관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설치시 면제된다. 다만 최상층의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설치. 																													
연결송수관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설치시 면제된다. 																																		
연결송수관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설치시 면제된다. 다만 최상층의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설치. 																																		
3-145	<p>(2) 중앙위원회 구성 (령 제18조의3)</p> <p>①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p>	<p>(2) 중앙위원회 구성 (령 제18조의3)</p> <p>①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p>																																	
3-150	<p>(3) 공동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법 제 21조,령 제 25조)</p> <p>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p>	<p>(3) 공동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법 제 21조,령 제 25조)</p> <p>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급 대상 선임 가능한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p>																																	
3-151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52 1093 536 1507" rowspan="3">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td> <td data-bbox="536 1093 724 1167">소방설비기사</td> <td data-bbox="724 1093 1203 1167">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2년 이상</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td> </tr> <tr> <td data-bbox="536 1167 724 1240">소방설비산업기사</td> <td data-bbox="724 1167 1203 1240">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td> </tr> <tr> <td data-bbox="536 1240 724 1314">-</td> <td data-bbox="724 1240 1203 131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td> </tr> <tr> <td colspan="2" data-bbox="252 1323 536 1429">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td> <td data-bbox="536 1323 1203 1429">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td> <td rowspan="6" style="vertical-align: middle;"> 옆 자격조건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td> </tr> <tr> <td colspan="3" data-bbox="252 1438 1203 1507">수정 후</td> </tr> <tr> <td data-bbox="252 1626 536 1675">소방설비기사</td> <td colspan="2" data-bbox="536 1626 1203 1675">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2년 이상</td> </tr> <tr> <td data-bbox="252 1684 536 1733">소방설비산업기사</td> <td colspan="2" data-bbox="536 1684 1203 1733">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td> </tr> <tr> <td data-bbox="252 1742 536 1792">-</td> <td colspan="2" data-bbox="536 1742 1203 1792">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td> </tr> <tr> <td data-bbox="252 1800 536 1850">소방공무원</td> <td colspan="2" data-bbox="536 1800 1203 1850">10년 이상</td> </tr> <tr> <td data-bbox="252 1859 536 1964">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td> <td colspan="2" data-bbox="536 1859 1203 1964">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td> </tr> <tr> <td data-bbox="252 1973 536 2078">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td> <td colspan="2" data-bbox="536 1973 1203 2078"></td> </tr> </table>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옆 자격조건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수정 후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옆 자격조건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수정 후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3-151	신설		
	2급	~~~~~ · 3급 대상물에 2년 이상 근무하고 2급 시험에 합격한자	
3급	1. 소방공무원 - 1년 이상		
	2.		
	의용소방대	2년 이상	옆 자격조건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자재소방대	1년이상	
	경호공무원, 별정공무원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	
경찰공무원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급 이상의 대상물 보조자 2년 이상		

3-152	구 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이 20만 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1만5천 m² 이상인 것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u>자동화재탐지설비</u>,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u>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u>)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지하구 공동주택 	

3-152	수정후		
	구 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u>아파트 제외</u>) 연면적이 20만 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u>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u>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u>아파트 제외</u>) 연면적 1만5천 m² 이상인 것(<u>아파트 제외</u>) <u>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아파트</u>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u>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u>)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지하구 <u>공동주택(특급, 1급 아파트제외)</u> 	
3급	<u>자동화재탐지설비</u>		

3-158	<p>Point</p> <p>1.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p>	<p>Point</p> <p>1. ~ <u>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u> - 발전사업자가 가동중인 발전소 (화력, 원자력 - 1만 kW 이하 제외, 신에너지 이용하는 발전소 - 2천 kW 이하 제외)</p>
-------	---	---

3-167	<p>(4) 시험위원 등</p> <p>① <u>응시자격 심사위원 및</u>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p> <p>㉠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p> <p>② <u>응시자격심사위원 및</u> 시험위원의 수</p> <p>㉠ <u>응시자격심사위원</u> : 3명 ㉡ <u>시험위원 중</u>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명 ㉢ <u>시험위원 중</u>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p> <p>③ <u>응시자격심사위원 및</u>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임명 또는 위촉된 <u>응시자격심사위원 및</u>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4) <u>시험위원</u></p> <p>①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p> <p>㉠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p> <p>② 시험위원의 수</p> <p>㉠ 3명 ㉡ 출제위원 : 시험 과목별 3명 ㉢ 채점위원 : <u>시험 과목별 5명 이내</u>(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p> <p>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	--

3-168	<p>② 국민안전처장관은 <u>관리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u>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국민안전처장관은 <u>관리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등에</u>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u>국민안전처 홈페이지등에</u> 공고하여야 한다.</p>
-------	--	---

3-171	<table border="1"> <tr> <td>주된 기술인력</td> <td colspan="2">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td> </tr> <tr> <td>보조 기술인력</td> <td>2인 이상. (② ~ ④목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일 것)</td> <td>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②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의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td> </tr> </table>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보조 기술인력	2인 이상. (② ~ ④목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일 것)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②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의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보조 기술인력	2인 이상. (② ~ ④목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일 것)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②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의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주된 기술인력</td> <td colspan="2">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td> </tr> <tr> <td>보조 기술인력</td> <td>2명 이상. (② ~ ④목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일 것)</td> <td>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②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③ <u>소방관련학과의 학사 학위 취득한 사람</u>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td> </tr> </table>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② ~ ④목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일 것)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②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③ <u>소방관련학과의 학사 학위 취득한 사람</u>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② ~ ④목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일 것)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②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③ <u>소방관련학과의 학사 학위 취득한 사람</u>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181	29.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법 제40조의 3)	
	신설 28-1.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우수품질 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 사용하도록 노력 29.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법 제40조의 3)	
3-184	3.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형식승인의 취소 4. 성능인증, 변경인증 및 취소 / 우수품질인증 및 취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원”)에 위탁
	3.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형식승인의 취소(청문포함) 4. 성능인증, 변경인증 및 취소(청문포함) / 우수품질인증 및 취소(청문포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원”)에 위탁
3-187	②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②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③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3-187	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경우	
	1) 2) 및 3)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상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3-187	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경우 1) 2) 및 3)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상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100 200 300 100 200 300

3-189	<p>조치명령 등(조치·선임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태풍, 홍수 등 재난 및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으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조치명령 등(조치·선임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태풍, 홍수 등 재난 및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경매·양도·양수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시장·상가·복합건축물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으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4-121	<p>문제 11번 해설 7일전까지 신고</p>	<p>1일전까지 신고</p>																
4-168	<p>(2) 방유제 높이, 면적 등</p> <table border="1" data-bbox="252 909 831 1003"> <tr> <td>높이</td> <td>0.5 m 이상 3 m 이하</td> </tr> <tr> <td>재질</td> <td>철근콘크리트, 흙</td> </tr> </table>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재질	철근콘크리트, 흙	<table border="1" data-bbox="869 846 1437 1025"> <tr> <td>높이</td> <td>0.5 m 이상 3 m 이하 지하매설 깊이 : 1m 이상 두께 : 0.2m 이상</td> </tr> <tr> <td>재질</td> <td>철근콘크리트</td> </tr> </table>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지하매설 깊이 : 1m 이상 두께 : 0.2m 이상	재질	철근콘크리트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재질	철근콘크리트, 흙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지하매설 깊이 : 1m 이상 두께 : 0.2m 이상																	
재질	철근콘크리트																	
4-172	<p>문제 6번</p>	<p>② 방유제의 재질은 철근콘크리트, 흙으로 할 것</p> <p>해설 방유제의 재질은 철근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p>																
5-18	<table border="1" data-bbox="252 1243 1246 1406"> <tr> <td>1,000m</td> <td>육내소화전설비</td> <td>자동화재 탐지설비</td> <td>연결송수관설비</td> </tr> </table> <p>※ 물분무화설비, 제연설비는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에 설치</p> <table border="1" data-bbox="252 1413 1246 1568"> <tr> <td>1,000m</td> <td>육내소화전설비</td> <td>자동화재 탐지설비</td> <td>연결송수관설비</td> </tr> </table> <p>※ 물분무화설비, 제연설비, 육내소화전(1,000m미만)은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에 설치</p>	1,000m	육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1,000m	육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1,000m	육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1,000m	육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5-52	<p>층수가 11층 이상</p>	<p>층수가 6층 이상</p>																
5-107	<table border="1" data-bbox="252 1641 831 1865"> <tr> <td>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td> <td>항공기격납고</td> </tr> <tr> <td>주차용건축물</td> <td>연면적 800 m² 이상</td> </tr> <tr> <td>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td> <td>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m² 이상</td> </tr> <tr> <td>기계식주차장치</td> <td>20대 이상</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252 1872 831 2105"> <tr> <td>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td> <td>항공기격납고</td> </tr> <tr> <td>주차용건축물, 차고, 철골조립식 주차시설</td> <td>연면적 800 m² 이상</td> </tr> <tr> <td>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td> <td>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m² 이상인 층</td> </tr> <tr> <td>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td> <td>20대 이상</td> </tr> </table>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항공기격납고	주차용건축물	연면적 800 m ² 이상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m ²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20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항공기격납고	주차용건축물, 차고,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 m ² 이상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	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m ² 이상인 층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항공기격납고																	
주차용건축물	연면적 800 m ² 이상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m ²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20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항공기격납고																	
주차용건축물, 차고,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 m ² 이상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	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m ² 이상인 층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5-284	<p>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p>	<p>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p>																

	<p>※ 설치제외 -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p>	<p>※ 설치제외 -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2층은 제외)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p>						
5-292	<table border="1"> <tr> <td>방열복</td> <td>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td> </tr> </table>	방열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table border="1"> <tr> <td>방열복 또는 방화복</td> <td>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td> </tr> </table>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방열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5-293	<table border="1"> <thead> <tr> <th>특정소방대상물</th> <th>인명구조 기구의 종류</th> <th>설치 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td> <td>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td> <td>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td> </tr> </tbody> </table>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 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 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특정소방대상물</th> <th>인명구조 기구의 종류</th> <th>설치 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u>지하층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u></td> <td>방열복 <u>또는</u>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td> <td>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td> </tr> </tbody> </table>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 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u>지하층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u>	방열복 <u>또는</u>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 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u>지하층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u>	방열복 <u>또는</u>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158	<p>문제 10 해설</p> $\underline{\text{복사열류}} = \frac{X_r Q}{4\pi r^2} = \frac{0.5 \times 10^3 \text{ kW}}{4\pi \cdot 15^2} = 1.768 \text{ kW/m}^2$	$\underline{\text{복사열류}} = \frac{X_r Q}{4\pi r^2} = \frac{0.5 \times 10^3 \text{ kW}}{4\pi \cdot 15^2} = 1.768 \text{ kW/m}^2$						
6-176	문제 9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u>주의사항</u>						
6-188	<p>문제 5번 해설</p> <p>3. 환산거리3. (Z_e) = $\frac{R}{W^{\frac{1}{3}}}$ ($m/kg^{\frac{1}{3}}$)</p>	<p>3. 환산거리(Z_e) = $\frac{R}{W^{\frac{1}{3}}}$ ($m/kg^{\frac{1}{3}}$)</p>						
6-190	문제 10	<u>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u>						
6-192	문제 21	<u>④ 안전증방폭구조</u>						
1-101	<p>문제 42</p> <p>답 ②</p>	<u>답 ①</u>						